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2. 4 선고 2019가단3433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주식회사 B

변론 종결 2020. 1. 7

판결 선고 2020. 2. 4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7,582,873원 및 그 중 229,303,580원에 대하여 2019.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1)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경매입찰보증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,보험가입금액 1,230,181,500원, 매각기일 2008. 1. 29.로 하는 내용의 경매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 건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2)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,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 우 피고 회사는 이를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.

나. 피고 C, D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.

다.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금지급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09. 1.28.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보험금 1,230,181,500원을 지급하였다.

라. 원고는 피고들 및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16878호로 구상금 청 구 소송을 제기하였고,위 법원은 2009 . 10. 23. '피고들 및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6,905,445원과 이에 대하여 2009. 1. 29.부터 2009. 9. 18.까지는 연 19%,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여,위 판결은 2009. 11. 20.확정되었다.

마. 피고들은 위 판결 이후 원고에게 원금 중 487,601,865원을 변제하였다.

[인정근거] O 피고 회사,C :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 O 피고 D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7,582,873원卜 원금 잔액 229,303,580원 +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지연손해금 688,279,293원) 및 그 중 229,303,580원에 대하여 2019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D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1) 피고 D는 원고에게 돈을 전부 변제하여 추가로 지급할 돈이

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2) 피고 D는 또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16878호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09. 11. 20.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고(민법 제165조 제1항), 그로부터 10년 내인 2019. 7. 19.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박예지